

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의안번호	제 61 호
의결 연월일	1996. 1. .

### 예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. 1. 12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1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1996. 1. 17.

제45회 (임시회) 제1차 총무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 (재무과장 : 임원순)

가. 개 정 이 유

-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코자 함.

나. 주 요 쏴 자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 (안 제2조제2항).
  - 상이급수 1 ~ 5급 → 1 ~ 6급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(안 제5조의2).
  -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용 부동산 -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/100 경감

-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추가 (안 제6조).
  - 과학관 (과학관육성법에 의한 등록)
  
- 소형자동차 세율개정 (안 제16조).

배 기 량	씨 씨 당 세 액 (원)		
	현 행	개 정	인 상
1,000씨이하	110	-	-
2,000씨이하	140	160	20
2,500씨이하	-	180	-
3,000씨이하	165	200	35
3,000씨초과	200	230	30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임치빈)

#### 가. 개정 배경

- 예산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「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」고 규정되어 있으며, 또한 「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」고 규정되어 있음.

- 금번 조례개정 의 근거는 세정 3400-1005 ('95. 12. 8) 호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과, 세정 3400-988 ('95. 12. 4) 호로 소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내용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현행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까지로 확대하고,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/10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.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, 또한 소형승용자동차세 세액을 배기량별 씨씨당 15원~50원 인상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 의견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복지시설의 확충과 소형자동차세의 감면액 축소로 점진적인 세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· 답변 및 토론요지

- 생 략

5. 심사 결과

- 원안가결